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796호

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(3차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2호(2008.01.31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주택과-5428(2008. 3. 26.)로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64호(2011. 6. 23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, 중구 고시 제2016-73호(2016. 5. 25.)로 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 결정, 주택과-28047호(2016. 9. 9.)로 사업시행 2차변경 인가된,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변경인가(3차) 신청(신당11조합 제2016-175호, 2016. 11. 2.)이 있어 인가에 앞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3차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11월 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6. 11. 30. ~ 2016. 12. 14.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 02-3396-5723) 및 조합사무실 (☎ 02-2237-4881)

다. 사업시행계획(요지)

- 1) 사업명칭 :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
- 3) 시행면적 : 8,119.0㎡
- 4) 시 행 자 :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6) 건축계획 : 아파트 3개동 176세대(임대아파트 없음) 및 부대복리시설
- 7) 정비기반시설 : 도로 946.4㎡, 근린공원 368.4㎡, 소공원1 284.7㎡, 소공원2 79.7㎡

라. 관계도서 : 생략(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도서와 같음)